

# 제1장 개인적 법익 침해

1. 사생활 침해 등
2. 피의자·피고인 신원공개
3. 성폭력피해자 보호 위반
4. 아동·청소년 보호 위반

# 1. 사생활 침해 등

## 사례 1

의결번호	제2021-54호
매 체 명	인터넷 국민일보
보도일 및 위치	2021년 1월 3일 연예면
기사제목	방청객 사진 놓고 낄낄... '놀토' 일반인 희화화 논란

### 1. 보도내용

「방청객 사진 놓고 낄낄... '놀토' 일반인 희화화 논란」 제하의 사진



※ 원 보도에는 비식별 처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비식별 처리함

## 2.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일반인의 초상을 공개한 부분을 수정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특정 방송 프로그램에서 과거 다른 프로그램의 방청객으로 나온 일반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재사용하여 외모를 희화화했다는 논란이 있다고 보도하면서 해당 방청객의 초상을 공표하였다.

이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볼 때, 일반인인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사례 2

의결번호	제2021-1007호
매 체 명	오편 디스커스
보도일 및 위치	2021년 9월 17일 네티즌화제면
기사제목	BJ철구, 외질혜와 이혼 마무리 "법적 솔로, 위자료는 20억"

1. 보도내용

「BJ철구, 외질혜와 이혼 마무리 "법적 솔로, 위자료는 20억"」 제하의 사진



※ 원 보도에는 비식별 처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비식별 처리함

## 2.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미성년 당사자의 초상 부분을 식별되지 않도록 하거나 수정·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한 유명 남성 BJ(방송자키)의 이혼 소식을 보도하면서 미성년자인 딸의 초상을 공표하였다.

비록 해당 사진이 이미 공개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해당 부모가 관련된 폭행 및 성매매 사실을 언급하며 이혼에 이르게 됐다는 부정적 내용을 보도하면서 이와 무관한 딸의 초상을 공표한 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 특히 미성년자의 성장과정은 당사자의 인격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함에도 초상을 그대로 공표한 점에서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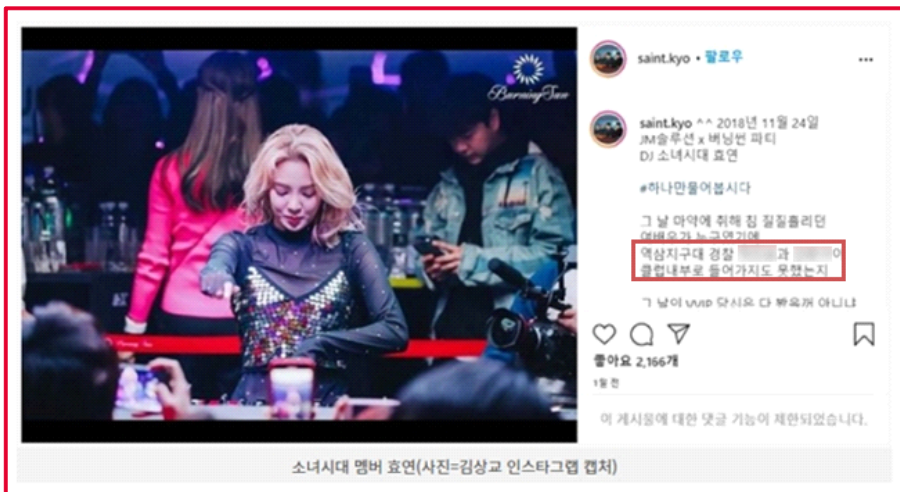
사례 3

의결번호	제2021-61호
매 체 명	뷰어스
보도일 및 위치	2021년 1월 14일 핫이슈면
기사제목	김상교, 효연 저격...옥타곤 포주 석씨가 관리한 연예인 물음표

1  
사  
생  
활  
침  
해  
등

1. 보도내용

「김상교, 효연 저격...옥타곤 포주 석씨가 관리한 연예인 물음표」 제하의 사진



※ 원 보도에는 비식별 처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비식별 처리함

2.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일반인의 성명을 공개한 부분을 수정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일명 ‘버닝썬 사건’ 당시 독직폭행 혐의를 받았던 역삼지구대 경찰관 2명의 성명을 게재하였다.

이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볼 때, 비록 이들이 경찰 공무원의 신분이라 하더라도 2020년 11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해당 보도는 당사자 신원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특정 범죄행위와 연결함으로써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등 당사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사례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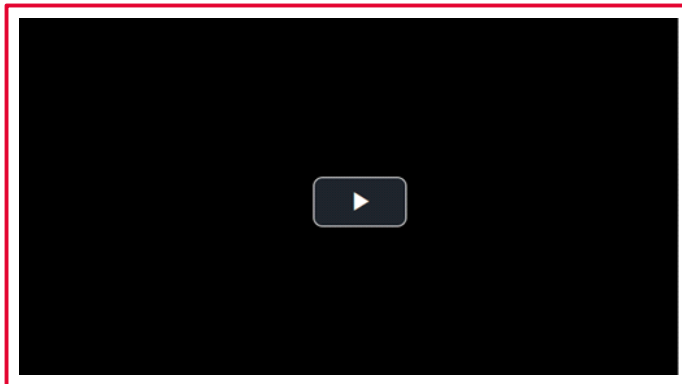
의결번호	제2021-634호
매 체 명	위키�트리(Wikitree)
보도일 및 위치	2021년 5월 31일 사회면
기사제목	보배드림 발각 뒤집은 여자 목사… 고깃집에서 이렇게 진상 부렸다 (사진·통화 녹취)

1. 보도내용

「보배드림 발각 뒤집은 여자 목사… 고깃집에서 이렇게 진상 부렸다 (사진·통화 녹취)」  
 제하의 링크 내 음성파일

여자 목사가 고깃집에서 음식을 다 먹은 후 환불해달라며 행패를 부렸다는 주장이 나왔다. 식당 측은 환불을 거부하자 이 여자 목사가 휴대폰으로 문자 욕설을 보내는가 하면 전화로 욕설을 가했다고 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식당을 방문하겠다고 연쇄 예약을 하고 '별점 테러'까지 가했다고 했다. 식당 측은 '음식 다 먹고 나간 다음 환불해달라고 협박하는 목사... 황당합니다'란 글을 27일 보배드림에 올려 이처럼 주장했다.

※ 기사 내 링크 클릭 시 나타나는 음성파일



## 2.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일반인의 음성을 공표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음성이 식별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양주의 한 고깃집에서 목사가 음식을 다 먹은 후 환불해 달라며 행패를 부렸다는 주장에 대해 보도하면서 고깃집 주인과 해당 손님 간 통화 녹음파일이 담긴 모 인터넷 게시판 링크를 게재하여 손님의 음성을 공개하였다.

이는 사인 간의 통화내용을 당사자 동의 없이 그대로 공개한 것으로 당사자의 음성권 등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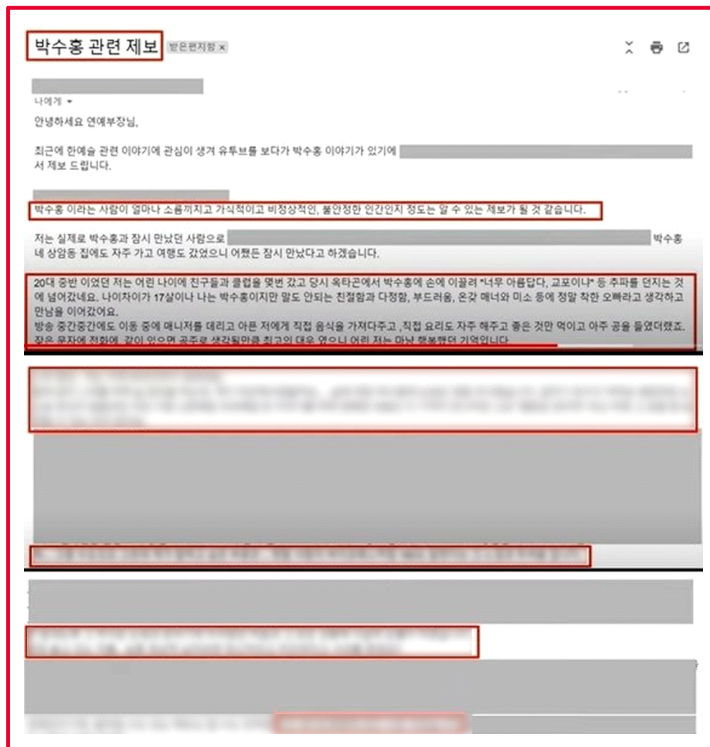
사례 5

의결번호	제2021-883호
매 체 명	뉴스1코리아
보도일 및 위치	2021년 8월 2일 연예면
기사제목	“갑자기 돌변한 박수홍…불안정하고 비상식적 이었다” 전 여친 ‘제보’

1  
사  
생  
활  
침  
해  
등

1. 보도내용

「“갑자기 돌변한 박수홍…불안정하고 비상식적 이었다” 전 여친 ‘제보’」 제하의 사진



※ 원 보도에는 일부 비식별 처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비식별 처리 추가함

## 2.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당사자의 사생활을 공표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유명 연예인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유튜브를 인용하여 그와 스파 펜션을 다녀왔다고 주장하는 한 여성의 제보내용을 여과 없이 보도하였다.

비록 해당 연예인이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내밀영역 내지 사적 영역에 속하는 사항을 동의 없이 공개한 것으로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사례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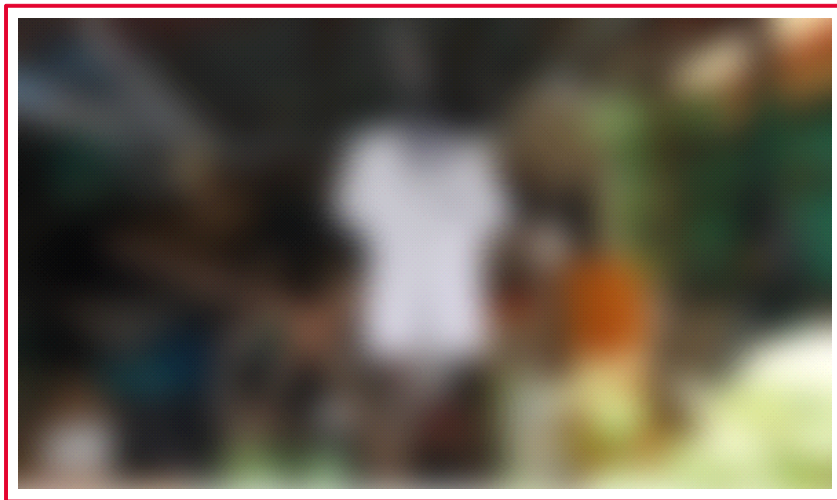
의결번호	제2021-1015호
매 체 명	세계일보
보도일 및 위치	2021년 8월 31일 11면
기사제목	할머니가 반 교복 빨랫줄에 덩그러니

1

사  
생  
활  
침  
해  
등

### 1. 보도내용

「할머니가 반 교복 빨랫줄에 덩그러니」 제하의 사진



※ 원 보도에는 비식별 처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비식별 처리함

### 2. 권고사항

향후 보도 시 유사한 법익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권고한다.

###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대구 서구 비산동의 한 주택에서 10대 형제가 친할머니를 살해한 사건을 보도하면서, 사건현장인 해당 주택의 전경 사진을 게재하였다.

설명 위 기사가 사회적 관심의 대상인 특정 범죄사건을 다루면서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 대해 보도한 것이라 하더라도, 사적 영역의 대상인 개인의 거주지 내부를 공개하는 것, 특히 해당 주택의 옥상 내부를 근접 촬영하는 등 거주 공간을 지나치게 상세히 공표한 것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공공의 이해를 위한 정보제공의 차원을 넘어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사적 영역에 속하는 사항을 공개한 것으로 이들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사례 7

의결번호	제2021-709호
매 체 명	인터넷 경북일보
보도일 및 위치	2021년 6월 24일 사회면
기사제목	주민 신고 접수…구미 실종 60대 공개수사 3시간 만에 찾아

1. 보도내용

「주민 신고 접수…구미 실종 60대 공개수사 3시간 만에 찾아」 제하의 사진



「이틀 전 집을 나가 공개수사로 전환됐던 ○○○(○○) 씨가 발견됐다. (중략)  
앞서 구미경찰서는 23일 오전 9시 55분 ‘○○○cm, 몸무게 ○○kg의 ○○세 ○○○ 씨를 찾습니다’라는 실종 경보 문자를 전송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미 ○○동에 거주하는 ○ 씨는 지난 21일 오전 집에서 나간 후 돌아오지 않고 있다. (후략)」

※ 원 보도에는 비식별 처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비식별 처리함

## 2.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일반인의 초상 등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지나치게 자세히 공표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구미 지역 경찰서의 공개수사와 주민의 신고를 통해 실종자를 무사히 찾을 수 있었다는 내용의 실종사건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실종자의 초상을 공개하고 성명, 나이, 체형, 거주지 등을 노출하였다.

위 기사는 실종자를 찾기 위해 공개수사가 이루어진 사안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기사의 보도시점이 실종자를 발견한 이후인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미 발견된 실종자의 실종당시 모습이 담긴 초상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지나치게 상세히 공개한 것은 일반인인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사례 8

의결번호	제2021-1186호
매 체 명	e머니에스(e money S)
보도일 및 위치	2021년 10월 30일 사회면
기사제목	경인 아라뱃길서 실종된 31세 여성…지인 “유언비어 자제 부탁”

1  
사  
생  
활  
침  
해  
등

1. 보도내용

「경인 아라뱃길서 실종된 31세 여성…지인 "유언비어 자제 부탁"」 제하의 사진



「인천 경인아라뱃길에서 실종됐던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지인이 “억측은 자제해달라”고 호소했다. (중략)

전단에 따르면, A씨는 27일 오전 1시 20분 인천 아라마루 전망대 앞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뒤 실종됐다. A씨는 키 ○○○cm, ○○형에 ○○ 체구이며 ○○색 머리를 하고 있다. (후략)」

※ 원 보도에는 비식별 처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비식별 처리함

## 2.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일반인의 초상 등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지나치게 자세히 공표한 부분을 식별되지 않도록 하거나 수정·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인천 경인 아라벳길에서 실종된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실종 당시 배포되었던 전단지를 그대로 게시하여 실종자의 초상과 나이, 인상착의를 공표하였다.

해당 기사의 게재시점이 실종자의 사망사실 확인 이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인에 불과한 일반인의 초상과 나이, 인상착의와 같은 사적 정보를 계속해서 공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한 것은 정보제공의 목적을 넘어선 것으로 당사자 및 유족의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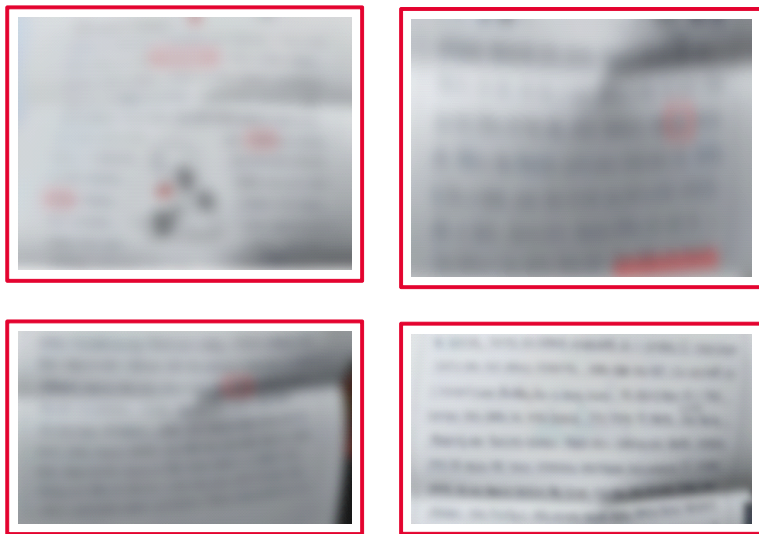
**사례 9**

의결번호	제2021-645호
매 체 명	위키트리(Wikitree)
보도일 및 위치	2021년 5월 11일 사회면
기사제목	“감옥에서 러브레터?” 정인이 양모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옥중편지’ 공개

1  
사  
생  
활  
침  
해  
등

**1. 보도내용**

「“감옥에서 러브레터?” 정인이 양모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옥중편지’ 공개」 제하의 사진



※ 원 보도에는 비식별 처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비식별 처리함

**2.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사적인 통신 내용과 일반인의 성명을 공표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사건의 피고인이 가족에게 보낸 옥중편지를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고 편지의 내용을 발췌하여 게재하였다. 비록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아동학대 범죄사건의 피고인이라 하더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 간 서신 내용을 게재한 것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위 기사는 해당 편지에서 아동학대 사망사건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피고인의 가족 및 주변인의 이름을 공표하였다. 일반인에 불과한 이들이 피고인의 가족이나 주변인이란 이유로 실명 공개를 수인해야 할 어떠한 이유도 없으므로 이들의 이름을 여과 없이 노출한 것은 당사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2항 및 제1조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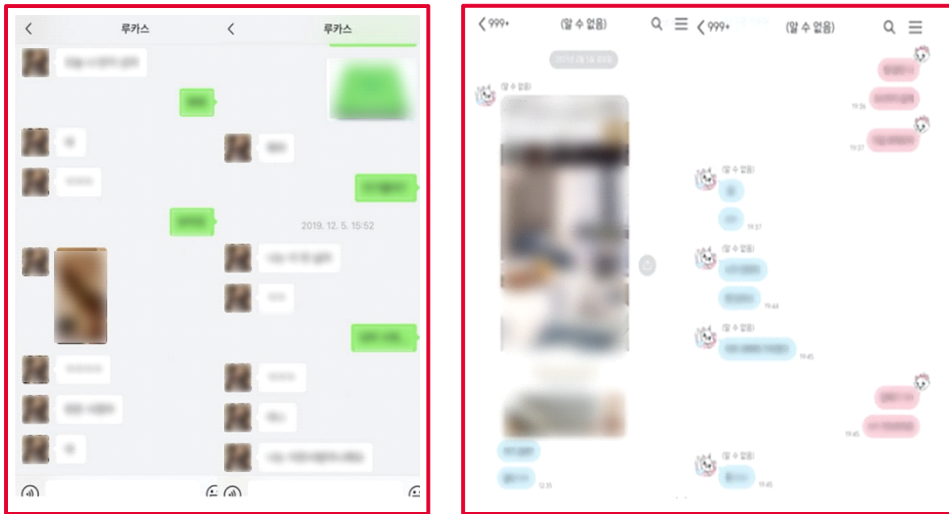
사례 10

의결번호	제2021-911호
매 체 명	텐아시아
보도일 및 위치	2021년 8월 24일 뮤직면
기사제목	NCT 루카스, 사생활 논란 속 '팬과 연애'

1  
사  
생  
활  
침  
해  
등

1. 보도내용

「NCT 루카스, 사생활 논란 속 '팬과 연애」 제하의 사진



※ 원 보도에는 비식별 처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비식별 처리함

2.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당사자의 사생활과 사적인 통신내용을 공표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유명 연예인의 사생활을 폭로한 SNS 게시글을 인용하여 보도하는 과정에서 해당 연예인과 글 게시자간의 통신내용을 여과 없이 공표하였다.

비록 해당 연예인이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대화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신내용을 상세히 게재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대화 상대방의 내밀영역 내지 사적 영역에 속하는 사항이 상세히 공개돼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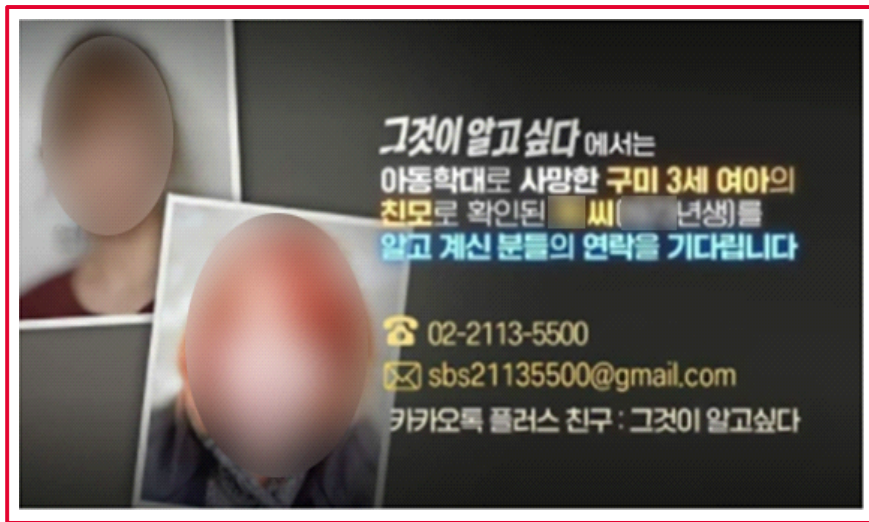
## 2. 피의자·피고인 신원공개

### 사례 11

의결번호	제2021-440호
매 체 명	일요신문
보도일 및 위치	2021년 3월 16일 특종/단독면
기사제목	구미 3세 여아 친모 ○ 씨 얼굴, '그것이 알고 싶다' SNS 통해 공개돼

### 1. 보도내용

「구미 3세 여아 친모 ○ 씨 얼굴, '그것이 알고 싶다' SNS 통해 공개돼」 제하의 사진



※ 원 보도에는 일부 비식별 처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비식별 처리 추가함

## 2.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형사사건 피고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한 부분을 수정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을 보도하면서 여아의 친모로 알려진 피고인의 초상과 성씨, 나이를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이는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 및 제27조제4항(무죄추정의 원칙)에 근거한 익명보도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비록 해당 사건이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일부 범죄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인인 피고인의 초상을 공개하는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사례 12

의결번호	제2021-1034호
매 체 명	살구뉴스
보도일 및 위치	2021년 9월 14일 정치/사회면
기사제목	제주도 오픈카 사망사건 소름돋는 진실..남자친구 ○씨 인스타 비공개 이유?

1. 보도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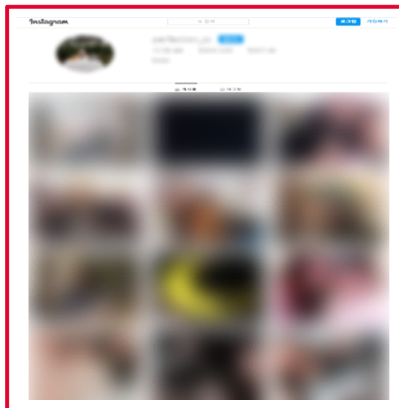
「제주도 오픈카 사망사건 소름돋는 진실..남자친구 ○씨 인스타 비공개 이유?」 제하의 링크 내 사진

A씨에 대한 4차 공판은 오는 11월 4일 오후에 열릴 예정입니다.

현재 이 사건은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화제가 되며 이 사건을 본 누리꾼은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사건이 공론화 되어 꼭 억울한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조은애씨 인스타그램 주소입니다. [@joonea](#)

※ 기사 내 링크 클릭 시 나타나는 사진(피고인 A씨 초상)



※ 원 보도 및 링크에는 비식별 처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비식별 처리함

## 2.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형사사건 피고인의 초상을 알 수 있게 공표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제주도에서 오픈카를 빌려 음주운전을 하다 연인을 숨지게 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숨진 여성의 SNS 주소를 링크(link)방식으로 게시, 이를 통해 피고인 남성의 초상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보도하면서 링크(link) 방식을 통해 별다른 제한 없이 사인에 불과한 피고인의 초상을 알 수 있도록 한 것은 그 실질에 있어 이를 직접 기사에 인용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한 것과 다를 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기사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판례로써 확립된 익명보도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2.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성폭력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보도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코치에 대한 1심 판결문을 입수해 그 내용을 보도하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해당 코치의 발언을 인용하며 자세한 범행수법을 공표하였다.

비록 해당 사건이 선수 본인의 '미투운동'으로 인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피해자가 별도로 판결문 열람제한조치를 신청하지 않아 그 공개가 위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판결문에 포함되어 있는 노골적인 성관련 표현을 여과 없이 노출한 것은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범행수법을 자세하게 공표하지 않고도 사안의 심각성을 알리거나 정보전달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음을 고려할 때,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2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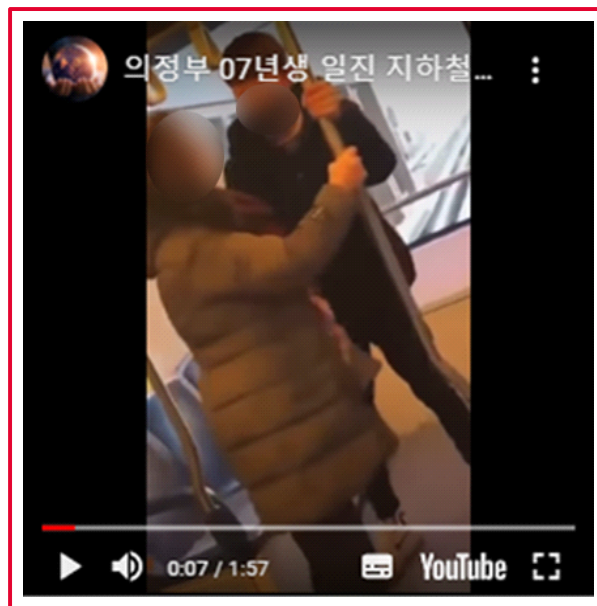
## 4. 아동·청소년 보호 위반

### 사례 14

의결번호	제2021-182호
매 체 명	디스패치뉴스
보도일 및 위치	2021년 1월 22일 4면
기사제목	“07년생 의정부 일진 근황”...지하철에서 노인 폭행하는 10대 중학생들 (영상)

### 1. 보도내용

「“07년생 의정부 일진 근황”...지하철에서 노인 폭행하는 10대 중학생들 (영상)」 제하의 영상



※ 원 보도에는 비식별 처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비식별 처리함

## 2.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소년보호사건의 사건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한 부분, 사건 당사자의 초상을 공개한 부분, 지나치게 폭력적인 장면을 필요 이상으로 게재한 부분을 수정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지하철에서 중학생들이 노인을 폭행한 사건을 보도하면서 미성년 가해자 및 일반인 피해자의 초상을 여과 없이 공개하였다. 이는 소년 보호사건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보도한 것으로, 아동 청소년 보호 기준에 위반될 소지가 있고 일반인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위 기사는 해당 사건 영상을 그대로 게시하여 폭력 장면을 필요 이상으로 묘사하고 선정적으로 보도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6조제1항, 제1조제1항, 제16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